



# 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·변경 안내

## 1. 관련

- 가.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(11.23.)
- 나.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(보험급여과-2312호, 2022.4.29.)
- 다. 정신(요양·재활)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(보험급여과-3872호, 2022.7.29.)
- 라.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(보험급여과-4237호, 2022.8.23.)
- 마.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(대면진료)(보험급여과-5880호, 2022.11.28.)
- 바.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(12월)(보험급여과-5881호, 2022.11.28.)

2.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를 아래와 같이 연장·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니,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수가명	기존	변경
대면진료관리료	'22.12.31.까지 적용	수가 변경 적용 ('23.1.1.~'23.1.31.) * 붙임 참고
대면투약관리료	'22.12.31.까지 적용	수가 변경 적용 ('23.1.1.~'23.1.31.) * 붙임 참고
투약안전관리료	'22.12.31.까지 적용	'23.1.31.까지 적용
노인·정신·장애인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	'22.12.31.까지 적용	'23.1.31.까지 적용

- 붙임 1.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.  
 2.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. 끝.

**보건복지부장관**



수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, 중앙방역대책본부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치과의사협회장, 대한치과병원협회장, 대한한의학협회장, 대한한방병원협회장, 대한요양병원협회장, 대한약사회장, 대한간호협회장, 제주특별자치도지사, 세종특별자치시장, 서울특별시장, 부산광역시장, 대구광역시장, 인천광역시장, 광주광역시장, 대전광역시장, 울산광역시장, 경기도지사, 강원도지사, 충청북도지사, 충청남도지사, 전라북도지사, 전라남도지사, 경상남도지사, 경상북도지사,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
주무관 **송서현** 보건사무관 **조영대** 보험급여과장 **정성훈** 전결 2022. 12. 19.

협조자 보건사무관 **배윤영**

시행 보험급여과-6262 (2022. 12. 19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보건복지부 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2737 팩스번호 044-202-3934 / [shsong98@korea.kr](mailto:shsong98@korea.kr) / 대한민국 공개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